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-161호

「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」가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30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예고

1. 제안 이유

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 내용

가.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 3조).

- 나.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거리예술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거리예술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.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(참조 : 행정 자치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제출 사항
 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 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- 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실) (전화 042-270-5124, FAX 042-270-5029, E-mail : cmdjyou@korea.kr)
- 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, 지역의 예술과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거리예술"이란 도로, 광장, 공원, 지하철 등의 공 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, 연극, 무용, 미술 등을 공연·전시하는 예술행 위를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대전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의성과 실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거리예술 사업)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
 - 2.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
 - 3.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여건 마련
 - 4.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
 - 5.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
- 제5조(업무의 위탁)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문화예술진흥법

-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 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 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 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6조(전문인력 양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·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육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시·도에 한 정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(이하 "전문예술법인·단체"라 한다)를 지정하여 지원·

육성할 수 있다.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2.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국악, 사진과 관련된 전시, 공연,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3.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- 4.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
- 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 인 또는 단체
-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·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·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
- 3. 그 밖에 전시·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 는 경우
-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·단체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-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

한 경우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·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따라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(대전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)발의원명단

연 번	발 의 의 원	서 명	비고
1	my wy m	in	
2	72024	19	
3	7 9 3	18/20	
4	31. 0] 6	En 8	
5	8 m/ 92	24	
6	烈生孩	20	
7	7 764	一块	
8	加州也	ichi,	
9	W 20 82	17213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